

제2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
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23. 3. 27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125호로 2023년 3월 16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3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체계화하여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지정

(안 제9조제2항)

나.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사무 중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

규정 추가(안 제9조제5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

라. 입법예고(2023. 2. 9. ~ 3. 2./21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체계화하여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

○ 검토결과

- 안 제9조제2항에서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지정하였으며,
- 안 제9조제5항에서는 위원회의 사무 중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규정을 추가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심의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참 고 자 료

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제11조(지역위원회) ①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소속으로 시·도 안전관리위원회(이하 “시·도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고, 시장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수·구청장 소속으로 시·군·구 안전관리위원회(이하 “시·군·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~6. (생략)

② (생략)

③ 시·도위원회와 시·군·구위원회(이하 “지역위원회”라 한다)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,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·조정 등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④ 삭제

⑤ 지역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